

-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1515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25일, 이승미 의원 외 12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0년 6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승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,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명시하여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 함 (안 제9조)
-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6. 3. ~ 2020. 6. 10.
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)¹⁾ : 수정가결
 -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^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 제정 및 연구용역 추진 중임
 - ※ (국토교통부) ‘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’ 용역 추진

1) 교통정책과-9922호(2020.6.10.) “시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(산업통상자원부) 「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(가칭)」 '21년 제정 계획

- 안 제10조의 재정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교육대상, 교육주체, 교육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,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“개인형 이동장치”에 대한 명확한 정의²⁾와 통행방법³⁾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현행 교통체계에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자전거도로”란 안전표지,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.
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1의2. “자전거등”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
적절하게 편입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「도로교통법」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임⁴⁾

〈 「도로교통법」 주요 개정내용 〉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▶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: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25km, 총 중량 30kg 미만 | |
| ▶ 운전면허 없이 이용가능 | ▶ 만13세 미만 이용 금지 |
| ▶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 | ▶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|

- 동 개정조례안은 ‘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통해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’하고 있는 바, 이는 관련 법 개정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또한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〈PM⁵⁾ 교통사고 발생 및 판매추이〉

(’19. 12월말 기준)

구 분	계	2017	2018	2019	증가율 (’17~’19)
PM교통사고	사고건수	117	225	447	282%
	사망자수	4	4	8	100%
	부상자수	124	238	473	281%
PM 판매대수		74,479	126,274	166,893	124%

자료 :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, 판매대수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임

3) 「도로교통법」 제13조의2(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)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(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 4) 「도로교통법」 부칙 <법률 제17371호, 2020. 6. 9.> (2020.12.10.일 시행)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5) PM(Personal Mobility, 개인형 이동장치)

- 한편, 동 개정안에서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질적 안전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다만, 실제 사업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부 사업계획 및 지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

- 한편,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및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⁶⁾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상의 조치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
- 아울러, 서울시는 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개정안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 홍보와 교통법규 및 기초 질서 유지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) 국토교통부, “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” 용역 추진 (연구기관 : 한국교통연구원)
 국토교통부·산업통상자원부, 「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가칭)」 '21년 제정 계획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이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정상의 조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 함 (안 제9조)
-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 (안 제10조)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1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7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이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정상의 조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 (안 제9조)
- 나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 (안 제10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마련하여야 한다.”를 “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<p>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 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 (안전교육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</u> 2. <u>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</u> 3. <u>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</u> 4. <u>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u> 5. <u>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② <u>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</u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전문위원실안)
	<p>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
<p><신설></p> <p>제9조·제10조 (생략)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등)</p> <p>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·제12조(현행 제9조와 제10조와 같음)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등)</p> <p>① ----- -----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·제12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 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
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
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 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</u> <u>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</u> <u>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80 315 336 353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80 907 520 945"><u>제9조·제10조</u> (생략)</p>	<p data-bbox="810 315 1410 539"><u>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562 1410 853"><u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907 1410 1010"><u>제11조·제12조</u>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